#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47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서영석·안민석·최혜영

문진석 • 이동주 • 이성만

최종유 • 김병욱 • 변재일

인재근 · 서영교 · 김성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 구매로 10대 47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에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유통한 10대 4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음. 2021년 검찰로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 수는 45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8%가 증가한 수치임.

그러나 현재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은 대부분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

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 4 신설).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생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
	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
	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
	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u>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